

[별표 2] <개정 1989.6.29, 1991.3.5, 1992.2.29, 1995.3.30, 1999.9.15>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1. 어 망
2. 부 자
3. 집 어 등(집어용 안정기·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4. 자동조상기
5. 양 망 기
6. 양 승 기
7. 통 발
8. 초 호
9. 낚 시
10. 연 승
11. 발 장
12. 해녀용 잠수복·잠수복지·물안경 및 태와
13.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14.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업용 선박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16. 선박용기관
17. 선외내연기관(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에 한한다)
18. 어선용레이더
19. 위성항법장치
20. 비디오 플로터(Video Plotter)
21. 어군탐지기
22. 어선용냉동기
23. 어망감시기
24. 샤클(Shackle)
25. 코스(Course)
26. 보빈(Bobbin)
27. 전개판
28. 물돛(Sea Anchor)
29. 양식용수차
30. 김양식용유기산
31. 팜사
32. 진주양식용핵
33. 양식용양수기
34. 양식용약품

- 35. 폐각분쇄기
- 36. 양식용블로어(양식용 Blower)
- 37. 어선용호중
- 38. 어선용선등
- 39. 어선용기적
- 40. 어선용수온계